

오류수정 보고서

1. 신고자

| | | | |
|-------|------------|--------------|-------|
| 일 자 | 2021.01.19 | 부 서 명 | 펀드회계팀 |
| 신 고 자 | 박 현 주 | <i>Print</i> | |

2. 오류수정 내역

| | |
|------------|--|
| 간접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UH)[주식]W 클래스 |
| 발생일자 | 2021.01.18 |
| 기준가격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
| 오류발생 내역 | <input type="checkbox"/>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 2021년 01월 15일(운용일), 당사 운용중인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CNY 274,303.42 가 입금되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해 당사 담당자가 수탁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내역 확인 미비로 기타이익으로 처리하였음. 2021년 1월 18일 해당 금액은 기존에 납부한 예치금에서 CNY 통화 계좌로 단순 대체된 금액으로 확인 되었고, 이에 해당 펀드 중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가 과대계상 되었음.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 2021년 1월 18일 수탁자 기준가 대사 팀이 기준가 상이함을 운용사에 통보. 명세 확인 결과 예치금에서 반환 된 금액을 단순 기타 이익으로 과대계상 처리함을 알게 됨. |
| 오류시정 절차 | <input type="checkbox"/>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 - 2021/01/18 16:30 경, 수탁사인 HSCB 은행이 기준가 대사 중 기존 예치금 반환 금액을 기타이익으로 과대계상함을 통보 - 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에 오류일(2021.01.18)부터 재계산을 요청함. - 재계산 결과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UH)[주식]W 클래스 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기준가 오차 허용범위 내 차이 발생함을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된 기준가격 변경처리(하나펀드서비스)(2021/1/18 22:00) - 수탁회사, 판매사 통보하여 해당 영업일 기준가 변경 정정동의 구함 (2021/01/19) -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에 기준가격 변경 공시 (2021/01/19) <input type="checkbox"/> 수익자에 대한 영향 및 재발방지방안 - 기준가격 오류일인 2021년 1월 18일 기준가 적용된 설정/헤지 확정 분은 없었 으며, 이에 수익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영향 없음을 확인. - 수탁사와 미확인 자금 출처 확인 강화 절차 마련 - 향후 미확인 현금 입금 시 출처 확인 시 까지 가수금으로 처리 |
| 공시유무 | 공시 펀드 |
| 기 타 | |

3. 승인자

| | | | |
|-------|---------|-------------------|-----------|
| 준법감시인 | 유인수 (인) | <i>Print</i> 합의일자 | 2021.1.1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2 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① 법 제 238 조제 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 238 조제 7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 261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6. 6. 28.>
 1. 법 제 229 조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 229 조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 229 조제 5 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 1 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 1 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법 제 238 조제 7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집합투자채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채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특별자산투자채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